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상설 운영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 및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명직 위원 규정 삭제(안 제9조제4항제2호)

나.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(안 제9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3. 4. 13. ~ 5. 3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행정국 대외협력과 박향서(☎2133-6655)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다.

제9조의4제5호 중 “제9조의3제1항의 사유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사유”로 한다.

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의5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9조의6 중 “2023년 9월 30일”을 “2028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·본부·국장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⑤ <u>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9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<u>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② <u>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</u></p>	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위촉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<u>위원회의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다.</u></p>

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5. 제9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6. (생략)

제9조의5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제9조의4(위원의 해촉)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사유

6.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5(회의) 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한다.

제9조의6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
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
30일까지로 한다.

제9조의6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
----- 2028년 6월 3
0일-----.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

3. 미첨부 사유

-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,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- 대외협력과 주무관 박향서(02-2133-6655)